

전기사고 소송판례 ②



工事中에 電工 感電事故

〈2〉



4. 고등법원 판결

가. 사 건 87나1893 손해배상(산)

나. 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 (1) 정○○외 4명 원고들 주소 서울구로구○동
- (2) ○○자 서울 동작구 ○○동 원고들 소송
대리인 변호사

다. 피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서울 용산구 ○○로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라. 변론종결 1987. 12. 1

마. 원심판결 지방법원○○지원 1987. 4. 1
선고. 86가합 273판결

바.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금원지급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정○○, 같은 김○○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정○○에게 금 3,036,342원,
같은 김○○에게 금 500,000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정○○, 같은 김○○의 나머지 항소
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 정○○, 같은 김○○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중 1/7은 피고의, 나머지는 같은 원
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원고
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정○○에게 금 68,107,623원, 원
고 김○○에게 금 2,500,000원, 원고 ○○걸
같은 ○○광 같은 ○○자 같은 ○○무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4. 11. 16
부터 원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
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원고 정○○, 같은 김○○의 원심판결중 아
래 금원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정○○, 같은 김
○○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정○○에게 금 50,002,000원, 같은 김○○에게
금 1,5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아. 이 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원고 정○○이 1984. 11. 1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피고회사가 건축한 서울 강동구 방이동 소재 ○○○○ ○○아파트 단지내 변전실에서 전공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1. 16. 10:30경 위 변전실내에 설치된 수전실비의 하나인 고압선로 개폐기(L. D. S반) 내의 22,900볼트 고압전류가 흐르는 동선에 접촉, 감전되어 우측수부 및 좌측족부 전기화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 7호증의 1(국가기술자격증), 을제 4호증(사실조회회보), 원심증인 윤○○의 증언으로 성립이 인정되는 강제 8호증(진술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윤○○ 및 당사증인 이○○의 각 증언(다만, 증인 이○○의 증언중 뒤에서 밑지 않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사고 당시 위 원고는 위 변전실 조장인 외 윤○○으로부터 변전실내 동력반의 에이(A)메타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으니, 전류, 전압등을 측정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변전일지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전압 600볼트, 전류 600암페어 미만의 저압용 전류측정기인 후크메타기를 이용하여 그곳 변전시설의 전류, 전압을 측정함에 있어, 위 고압선로 개폐기(L. D. S반) 내부의 전압까지를 측정하기 위해 위 고압선로 개폐기를 열고 그 안에 가설된 위 고압선에 위 후크메타기를 갖다 댄으로써 이를 통하여 위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런데 위 원고는 전기공사 기능사 2급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위 변전실에 근무한지 불과 15일 정도밖에 안되었을 뿐더러, 이 사건 사고전에는 변전

실내의 전기시설에 대한 전류, 전압등의 측정작업은 한 적이 없었으며, 또 위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변전실내의 전기시설, 특히 위 고압선로 개폐기의 구조나 기능 및 위험성, 위 후크메타기의 용도나 기능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따라서, 을제 9호증, 이력서 중 위 원고의 경력에 관한 기재부분을 과연 진실한 것인지 의심된다),

위 변전실 전기주임인 소외 이○○이나 조장인 위 윤○○은 평소에는 물론 위 원고에게 위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서도 위 전기시설의 구조, 위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상의 주의사항, 후크메타기의 용도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별다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제 8호(확인서)의 기재의 당사증인 이○○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제 5호증(검정실무편람), 을제 6호증(물가재료내용), 을제 7호증의 1내지 8(각 보안일지)의 각 기재와 당사증인 김기욱(대한전기협회 기술과장)의 감정결과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반증이 없으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 5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은 원고 정○○의 어머니, 원고 ○○○결 같은 ○○○광 같은 ○○○무 같은 ○○○자는 그의 형제자매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기공사 기능사 2급의 자격까지 갖춘 원고 정○○이 위 고압선로 개폐기내의 전기시설에 관한 전문지식도 없이 감전사고의 위험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경솔하게 고압전류가 흐르는 동선에 접촉기를 갖다댄 잘못에 그 대부분의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위 윤○○, 이○○에게도 위 원고에게 위와 같이 위험한 곳에서의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사전에 위 변전실내의 전기시설의 구조와 위험성, 위 전류 측정작업상의 주의사항, 위 후크메타기의 용도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주지시키는 등 철저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록 사전에 배려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갑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채 막연히 위 원고에게 전기에 관한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으리라 믿고 위 전류 등의 측정작업을 지시한 점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들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이 안전배려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앞서 본 위 원고의 과실은 비록 피고의 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위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크게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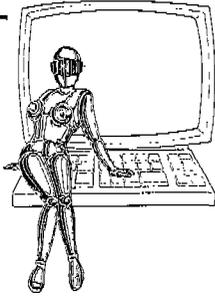
(가) 일실수입

위에 나온 갑제 5호증, 갑제 7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1호증의 2 (장해급여 사정서), 3 (수지관절운동범위 및 추상에 관한 측정), 5 (진단서), 갑제 3호증의 1, 2 (간이생명표표지 및 내용), 갑제 4호증의 1, 2 (건설물가표지 및 내용), 갑제 9호증 (평균임금 정정 통보)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윤○○의 증언 및 원심법원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측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정○○은 1960. 2. 11생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24년 9개월 남짓하고 그 평균연령은 42.60년 정도인 사실, 위 원고는 전기공사 기능사 2급 기술자격을 가지고 1984. 11. 1부터 피고회사의 ○○동 ○○아파트 변전실에 근무하면서 하루 평균 임금 8,579.45원을 받아온 사실, 피고회사는 위 아파트를 1984. 12월까지 관리한 후 아파트 주민자치관리 위원회로 이관시킬 예정이었고, 따라서 위 원고도 그 기간 동안 일용노임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회사에 고용된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사고시부터 1986. 2. 28까지 입원치료를 받는 등 15개월 이상 요양을 하여 치료 종결되었으나, 위 상해의 개선곤란한 후유증으로 우측 제 1수지 절단, 우

측 제 2, 3, 4수지 강직 및 우측상지 신경마비 좌측 제 1족지 절단 및 비골신경마비 등의 장해가 남게 되어 전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의 90퍼센트 정도를 상실하게 된 사실, 위 사고당시에 가까운 1984. 9 말 현재의 내선 전공의 임금이 하루 금 12,8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일용전공은 한달에 25일씩 55세가 끝날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런데,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앞으로 위 직종에는 종사할 수 없고,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전제로 위 직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에서 나머지 노동능력으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위 사고로 인한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설사 위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원고가 위 사고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앞으로 위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의 나이, 학력, 경력,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위 원고가 앞으로 나머지 노동능력을 가지고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기 보다는 중전 직종과 관련 또는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여 사고 당시 얻고 있던 수익중 나머지는 노동 능력비율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익은 얻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원고의 일실수익은 위 직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중 위 노동능력 상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일부터 피고회사와의 고용계약 기간 만료일인 1984. 12 말까지는 피고회사에서 근무하여 얻을 수 있었던 월수입 금 260,958원 (8,579.45원)×36512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전부를 그 이후 치료종결일인 1986. 2. 28까지는 일용 내선전공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던 월수입 금 3,000원 (12,800원×25일) 전부를, 그 이후 55세가 끝나는 2016. 2. 10까지는 앞서 본 노동능력 상실비율에 상응하는 월수



용어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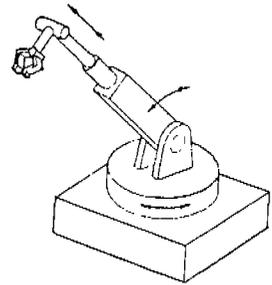
메카트로닉스 기초 이해를 위한

극좌표 로봇(polar coordinates robot)

수평면 내의 회전운동과 부양(俯仰)운동, 반지름 방향의 신축운동을 조합해서 작업하는 손의 위치를 결정하는 산업용 로봇.

그림에서처럼 기대 위에서 선회하는 자리가 있고 이것에 부양운동을 하는 팔이 붙어 있다. 팔은 다시 반지름 방향으로 신축하는 운동을 하여 전체로서는 극좌표계와 같은 좌표 변수에 의해서 3차원 공간에서의 위치결정을 한다.

작업 가능한 영역은 비교적 넓고 2개 회전운동의 합성에 의해 선단부의 동작 속도는 상당히 빨리 할 수 있다. 단, 이런 위치결정방식은 공작기에서는 유사한 것이 없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직감으로부터는 약간 벗어난 것이다.



입금 288,000원 (320,000원×90/100)을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다만 위 원고는 피고회사와의 고용계약만료일 이후 치료 종결일까지의 일실수익도 피고회사에서 사고 당시 얻고 있던 월수입금 260,958 원을 기초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사고 이후 치료종결일까지 15개월간은 월수입 상실액 금 260,958원을, 그 이후 55세가 끝나는 날까지 35개월간은 월수입 상실액 금 288,000원을 기초로 하여, 위 손해전부를 월 5/12분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금 64,447,973원이 된다.

$$* 260,958 \times 14.5205 + 288,000 \text{원} (225.1411 - 14.5205) = 64,447,973 \text{원}$$

나아가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입사일인 1984. 11. 1부터 55세까지 31년 3개월간 근속하고 정년퇴직시 근속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피고회사에서 퇴직함으로써 정년퇴직시 받게 되는 퇴직금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퇴직금의 이 사건 사고 당시, 당시 현가액인 금 4,807,211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피고회사에 1984. 11월부터 같은 해 12월말까지 2개월간 임시 일용직으로 고용되었다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10호중(퇴직금 지급규정)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1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 한하여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원고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도 없이 그 이유 없다.

(나) 보조구 대금 상당의 손해

위에 나온 신체감정측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측 제 1수지 절단으로 인하여 그 생존여명시까지 의수지 1개를 착용하여야 하고 그 가격은 금 55,000원이며 수명은 18개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여명이 42년 남짓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가 평생 사용할 의수지 대금 합계액을 월 5/12분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율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별지계산서 기재와 같이 금 817,359원 (실제는 866,239원이나 위 원고의 청구에 따른다) 이 된다.

(다) 과실상계등

따라서 원고 정○○이 위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는 모두 금 65,265,368원(64,447,973+817,395)이 되나 이 사고에 있어 앞서 살핀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이중 금 16,316,342원 (65,265,368×25/100)을 배상함이 상당하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윤제 3호증(보상금 지급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그간 휴업급여금 2,409,090원, 장애급여금 5,748,23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8,159,022원 (16,316,342 - 2,409,090 - 5,748,230)만이 남는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정○○ 자신은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 함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각 금전지급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 앞서 살핀 위 사고의 경위, 그 결과, 원고 정○○의 연령, 직업, 원고들의 신분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정○○에게 금 2,000,000원, 원고 김○○에게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

들에게 각 금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정○○에게 위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10,159,022 (8,159,022원+2,000,000원), 원고 김○○에게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관하여 위 사고일인 1984. 11. 16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신판결 선고일인 1987. 12. 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소정의 연 2할 5분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의 원고 정○○, 같은 김○○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의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중 주문 제2항의 인용금원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추가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원심판결은 원심인용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분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어 이 부분도 부당하나, 위 원고들은 위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한 바 없다), 원심판결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그 지연 손해금 부분에 있어 당심과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원고 정○○, 같은 김○○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7. 12. 29

재판장 판사 ○○○외 2명